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152-000117-01

# 윤리강령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CONSEIL INTERNATIONAL DES MUSEES

# 윤리강령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전문직 윤리강령은 1986년 11월 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1년 7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0차 총회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으로 개명되어 수정되었으며, 2004년 10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발행처

### ICOM 한국위원회

140-026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82 (0)2 795 0937  
팩스: +82 (0)2 795 0939  
이메일: icomkorea@dreamwiz.com  
웹사이트: <http://www.korea.icom.museum>

### 국립민속박물관

110-82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전화: +82 (0)2 3704 3114  
팩스: +82 (0)2 3704 3149  
이메일: webmaster@nfm.go.kr  
웹사이트: <http://www.nfm.go.kr>

## 발행일 2007년 5월

ICOM 박물관 윤리강령(영어본 번역 한글본)  
발간등록번호 11-1370152-000117-01  
인쇄본 ISBN 978-89-92128-14-8 93080  
전자본 ISBN 978-89-92128-15-5 98080

ICOM 박물관 윤리강령(영어본) © ICOM, 2006  
ISBN 92-9012-159-9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토대는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이다. 본 강령은 박물관과 박물관직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ICOM 회원들은 가입과 동시에 본 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제박물관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Maison de l' 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 France  
전화 : +33 (0)1 47 34 05 00  
팩스 : +33 (0) 1 43 06 78 62  
이메일: [secretariat@icom.museum](mailto:secretariat@icom.museum)  
웹사이트: <http://www.icom.museum>

##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의 지위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은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가 제정하였다. 이는 박물관이 지켜야 할 윤리 성명서로서 ICOM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본 강령은 국제 박물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ICOM 회원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 하는 것은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 박물관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

본 ICOM 강령은 박물관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기술한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업무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일련의 원칙들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일정한 최소한의 규범들이 법이나 정부의 법규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직업적 규범에 대한 지침과 평가가 '인증', '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체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ICOM 본부, 해당국의 ICOM 국가위원회, 또는 관련 ICOM 국제위원회를 통해 지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나 박물관 관련 기관들이 추가적인 규범을 작성할 때, 본 강령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의 번역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은 ICOM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발간되었다. ICOM은 본 강령을 기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윤리강령의 번역본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번역 대상 언어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위원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번역본을 발간함에 있어, 박물관에 대한 전문성과 아울러 언어적 전문성도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번역에 사용된 원본 언어와 번역본 발간에 참여한 국가위원회(들)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강령의 전문 또는 일부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과 같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목 차

page VI	<b>서문</b> Geoffrey Lewis (ICOM 윤리위원회 위원장)
	<b>ICOM 박물관 윤리강령</b>
page 1	<b>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으로서의 적격성</li><li>· 물질 자원</li><li>· 재정적 자원</li><li>· 직원</li></ul>
page 3	<b>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장품의 취득</li><li>· 소장품의 처분</li><li>· 소장품의 관리</li></ul>
page 6	<b>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요한 증거</li><li>· 박물관의 수집 활동과 연구</li></ul>
page 8	<b>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열 및 전시</li><li>· 기타 자원</li></ul>
page 9	<b>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정 업무</li></ul>
page 9	<b>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장품의 출처지</li><li>·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li></ul>
page 11	<b>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적 체계</li></ul>
page 11	<b>8.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직업적 품행</li><li>· 이해의 상충</li></ul>
page 14	<b>용어집</b>

## 서문

본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은 6년 동안 이루어진 개정 작업의 완성물이다. 현대 박물관 업무의 시각에서 ICOM 윤리강령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2001년에는 이전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하여 수정본을 발행하였다. 2001년에 예견되었듯이, 이번의 윤리강령은 종합적인 윤리 지침을 보다 상세히 제공하고, 직업 활동의 핵심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박물관직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본 강령은 3차에 걸쳐 회원들과 협의한 내용이며 2004년 ICOM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제21차 총회에서 구두 표결로 승인되었다.

본 강령의 총체적인 정신은 박물관직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직업 의식의 확립 뿐만 아니라 사회, 지역 공동체, 대중 및 다양한 관람객 층에 대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문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장 구성, 핵심 사항에 대한 강조와 간결한 단락의 사용 등과 같은 변화도 보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2.11항과 3. 5, 6장에서 개괄하고 있는 원칙에서 살펴볼 수 있다.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령이 가변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공공 규정 부문에서의 핵심적인 분야의 직업적 자율에 관한 방안을 제공한다. 이는 박물관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합리적인 기대 사항에 관한 성명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박물관직 종사자들이 정당히 추구할 수 있는 업무 수행에 관한 최소한의 규범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ICOM은 1970년 소장품 취득 *윤리강령*을, 그리고 1986년에는 *전문직 윤리강령* 전문을 발행하였다. 본 개정본과 2001년의 잠정 합의된 수정본의 많은 부분이 이전의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정의 주요한 작업과 새로운 구성은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수행한 것이다. 목표와 일정에 맞추기 위한 위원들의 결단력과 회의(실제 회의와 전자 회의 모두)에서 보여준 그들의 공헌에 대하여 모두 감사하고 있다. 참고로 위원들의 성명이 아래에 적혀있다.

우리의 임무를 마치면서 윤리강령의 사명을 새로이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넘기고자 한다. 차기 윤리위원회는 ICOM의 전 부회장이며 동시에 본 위원회의 전 위원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지닌 Bernice Murphy를 신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전의 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개정본은 특정한 요구사항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전문가 단체가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강령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한의 규범을 제공하고 있다. ICOM은 특정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및 전문직 윤리강령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결과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물은 아래 ICOM 본부로 송부할 수 있다.

주소: ICOM, Maison de l' 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이메일: secretariat@icom.museum

## Geoffrey Lewis

위원장, ICOM 윤리위원회 (1997-2004)  
ICOM 회장 (1983-1989)

## 2001-2004년 ICOM 윤리위원회

위원장: Geoffrey Lewis (영국)

위원:

Gary Edson (미국)

Per Kåks (스웨덴)

Byung-mo Kim (대한민국)

Pascal Makambila (콩고)

Jean-Yves Marin (프랑스)

Bernice Murphy (호주)

Tereza Scheiner (브라질)

Shajés Tshiluilu (콩고민주공화국)

Michel Van-Praët (프랑스)

ICOM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윤리적 사안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윤리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메일: ethics@icom.museum)



## ICOM 박물관 윤리강령

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
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
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1

##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

### 원칙

박물관은 유형·무형의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물관의 전략적 지도 감독에 관여하는 관리주체는 박물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닌다.

### 기관으로서의 적격성

#### 1.1 합법적 설립의 문서화

관리주체는 박물관의 법적 지위, 사명, 영속성 및 비영리적 성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공표한 성문화된 정관, 규칙 또는 국내법에 따라 작성된 공문서를 박물관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1.2 사명, 목적, 정책에 대한 성명서

관리주체는 박물관의 사명, 목적, 정책 및 관리주체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 공표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물적 자원

#### 1.3 건물

관리주체는 박물관의 사명에 명시된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적합한 환경이 구비된 알맞은 건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4 접근성

관리주체는 박물관과 소장품을 적당한 시간과 정기적인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 1.5 후생 및 안전

관리주체는 후생, 안전 그리고 접근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기준이 박물관 직원 및 방문객에게 공히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1.6 재난 대비 보호

관리주체는 자연 재해 및 인재에 대비하여 일반인과 박물관 직원, 소장품, 그 밖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 1.7 보안 요건

관리주체는 진열, 전시, 작업실 및 수장고 보관, 그리고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소장품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 1.8 보험 및 손해 보상

소장품을 위해 상업적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러한 보험이 적절한지 여부, 이송 또는 대여 중인 소장품과 박물관의 책임 하에 있는 기타 물건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손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박물관 소유가 아닌 모든 박물관자료까지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정적 자원

### 1.9 자금 운용

관리주체는 박물관 활동을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회계 처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 1.10 수입산출에 대한 정책

관리주체는 본래의 운영 활동이나 외부로부터 기인하여 산출된 수입에 대해 명문화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박물관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시, 활동 등의 내용과 총체성에 대한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수입 산출 활동이 기관이나 공공성에 대한 규범에 위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6.6 참조).

## 직원

### 1.11 고용 정책

관리주체는 인사에 관한 모든 활동이 적절하고 합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1.12 관장의 임명

박물관의 관장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질에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품행이 겸비된 지적 능력과 전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3 관리주체와의 소통

박물관의 관장은 해당 관리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며, 직접적인 보고 의무를 지닌다.

### 1.14 박물관 직원의 자질

모든 책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질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2.19; 2.24; 8장 참조).

### 1.15 직원의 훈련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박물관 직원의 평생 교육과 업무 능력 개발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1.16 윤리적 상충

관리주체는 박물관 직원에게 본 윤리 강령의 조항, 국내법 또는 기타 전문 분야의 윤리강령과 상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 1.17 박물관 직원과 자원 봉사자

관리주체는 자원 봉사자와 박물관직 종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활성화하는 성문화된 자원 봉사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 1.18 자원 봉사자와 윤리

관리주체는 자원 봉사자가 박물관 활동 및 개인 활동을 할 때 ICOM 박물관 윤리강령과 기타 적용 가능한 강령 및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 2

###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

#### 원칙

박물관은 자연, 문화, 과학 유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장품을 수집, 보존, 장려할 의무가 있다. 소장품은 중요한 공공 유산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국제적 법령에 의해 보호 받는다. 정당한 소유권, 영속성, 문서 및 정보 관리, 접근성 그리고 책임 있는 처분 등을 포함하는 책무는 이와 같은 공적인 의무에 내재되어 있다.

#### 소장품의 취득

##### 2.1 소장품 정책

박물관의 관리주체는 소장품의 취득, 관리, 이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화된 소장품 정책을 채택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 정책은 소장품 목록에 수록되지 않거나, 보존 처리 또는 전시되지 않는 박물관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7; 2.8 참조).

##### 2.2 합법적 소유권

박물관이 합법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박물관자료도 구입, 기증, 대여, 유증 또는 교류를 통해 수집될 수 없다.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3 출처와 주의 의무

박물관자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 기증, 대여, 유증,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해당 자료들이 불법적인 소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또는 (박물관 소재국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소유되었던 출처지 국가나 제2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주의의 의무를 통하여 박물관자료의 발굴이나 제작 시점 이후의 모든 내력을 입증해야 한다.

##### 2.4 인가받지 않았거나 비학리적인 현지 조사에서 기인한 박물관자료

박물관은 인가받지 않았거나 비학리적인 현지 조사, 기념물, 고고학 또는 지질학적 유적지, 생물종 또는 자연 서식지에 대한 의도적인 파괴 혹은 훼손이 수반되어 얻어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박물관자료를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적법한 관계 당국이나 정부 기관에 박물관자료의 발견에 대한 보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취득할 수 없다.

##### 2.5 문화적으로 민감한 박물관자료

사람의 인골이나 신성한 의미를 지닌 박물관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삼가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될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규범과 함께, 박물관자료가 유래되었다고 알려진 지역 사회, 민족 또는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믿음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7; 4.3 참조).

## 2.6 보호 대상 생물학적 지질학적 박물관자료

박물관은 야생 동식물 보호나 자연사 보존에 관한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법령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수집, 매매, 또는 양도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박물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 2.7 살아있는 소장품

소장품이 살아 있는 동식물 표본을 포함하는 경우, 야생 동식물 보호나 자연사 보존에 관한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법령이나 협정뿐만 아니라 표본들이 연유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2.8 활용을 위한 소장품

박물관자료가 유형물로서의 기능보다 문화, 과학 또는 기술적 과정의 보존에 중점이 주어지거나, 통상적인 이용 혹은 교육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 박물관의 소장품 정책에는 활용을 위한 소장품 유형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2.9 소장품 정책 범주 이외의 취득

박물관의 문서화된 소장품 정책 이외의 범주에 속하는 박물관자료의 취득은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허용된다. 관리 주체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맥락을 포함한 박물관자료의 중요성, 다른 박물관이 이러한 박물관자료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특정한 이해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합법적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박물관자료는 취득되어서는 안 된다. (3.4 참조).

## 2.10 관리주체 임원 또는 박물관 직원의 제공에 의한 취득

관리주체의 임원, 박물관 직원 혹은 그들의 가족 친지나 동료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박물관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매, 기증 또는 세금수혜와 관련한 기증인지 등에 관계없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11 최후의 보관소

본 윤리강령의 어떠한 조항도 박물관이, 법적 책임 관할지역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정하게 수집 혹은 발견된 박물관자료에 대한, 인가된 보관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 소장품의 처분

### 2.12 처분에 대한 법적 혹은 기타 권한

박물관이 처분을 허가하는 법적 권한을 가졌거나 혹은 처분 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박물관자료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 또는 기타 준수 사항과 절차가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박물관자료의 취득이 의무 사항이었거나 다른 규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가나 이러한 준수 행위가 기관에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들은 지켜져야 한다. 적절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13 박물관 소장품에서의 처분

박물관 소장품에서 박물관자료를 처분할 때에는 박물관자료의 중요도, 특성 (새롭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적 지위 그리고 처분 행위로 인해 잃을

수도 있는 공적 신인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 2.14 처분에 대한 책임

관장 및 해당 소장품의 담당 학예직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박물관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활용을 위한 소장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2.7, 2.8 참조).

## 2.15 소장품에서 처분된 박물관자료의 처리

각 박물관은 기증, 양도, 교환, 매각, 반환 혹은 훼손 등으로 인해 박물관자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인가된 방법이 정의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령 기관에는 제한없는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은 모든 처분 결정, 관련 박물관자료, 박물관자료의 처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필수적인 전제로서, 처분된 박물관자료가 우선적으로 다른 박물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 2.16 소장품 처분에 따른 수입

박물관 소장품은 공적 위탁 상태에 있으므로 현금 변환이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박물관 소장품에서 처분되는 박물관자료로부터 발생한 현금이나 보상은 전적으로 소장품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대개 동일한 종류의 소장품 취득에 사용되어야 한다.

## 2.17 처분된 소장품의 구입

박물관 직원, 관리주체 혹은 그들의 가족 친지나 동료들은 그들이 책임지고 있던 소장품에서 처분한 박물관자료를 구매할 수 없다.

## 소장품의 관리

### 2.18 소장품의 영속성

박물관은 소장품(영구 및 임시 모두)과 적절히 기록된 관련 정보가 현재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안전한 조건 하에 현재의 지식과 자원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 2.19 소장품에 대한 책임의 위임

소장품 관리에 관한 직업적 책임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직원 혹은 충분히 지도받은 직원에게 맡겨져야 한다. (8.11참조)

### 2.20 소장품에 관한 문서 및 정보 관리

박물관 소장품은 인정된 업무 기준에 따라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작성된 자료에는 박물관자료의 감정, 설명, 관련 자료, 출처, 상태, 취급 방법 및 현재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한 환경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박물관 직원이나 적법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 2.21 재난 대비 보호

무력 충돌 및 전쟁, 기타 인재 또는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22 소장품 및 관련 정보 자료의 보안

박물관은 소장품 정보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 신상 관련 정보나 기밀 사안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 2.23 예방 보존

예방 보존은 박물관 정책과 소장품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소장품이 수장고 및 전시실 내에 있거나 운송 중인 경우 보호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박물관직 종사자의 필수적인 임무이다.

## 2.24 소장품 보존과 수복

박물관은 박물관자료가 언제 보존·수복 처리 및 보존 전문가·수복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한지를 정하기 위해 소장품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주된 목적은 박물관자료의 안정화 이어야 한다. 모든 보존 처리 절차는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처리 절차는 가능한 한 역으로 복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변경 작업 결과는 원래의 박물관자료와 명백하게 구별 가능하여야 한다.

## 2.25 살아 있는 동물의 후생

살아 있는 동물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동물의 보건과 후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뿐만 아니라 직원 및 관람객의 보호를 위하여 수의학 전문가에게 승인받은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 여부도 명백히 확인 가능해야 한다.

## 2.26 박물관 소장품의 사적 이용

박물관 직원, 관리주체, 그들의 가족 친지나 동료 및 그 외 사람들은 박물관 소장품을 한시적일지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

## 원칙

박물관은 소장품에 있는 주요한 증거들의 관리, 접근성 그리고 해석과 관련된 모든 면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

## 주요한 증거

### 3.1 주요한 증거로서의 소장품

박물관의 소장품 정책은 주요한 증거로서의 소장품에 대한 중요성을 명백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소장품 정책이 현대의 지적 경향이나 현재 박물관에서의 관행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3.2 소장품의 유용성

박물관은 소장품과 모든 관련 정보를 보안과 안전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 박물관의 수집 활동과 연구

### 3.3 현지 수집 활동

현지 수집 활동을 하는 박물관은 학문적 기준과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법과 협약에 입각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현지 조사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의견, 환경 자원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풍습에 대한 존중과 고려가 있어야만 수행될 수 있다.

### 3.4 주된 증거의 예외적인 수집 활동

예외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박물관자료 일지라도 학문에 기여하는 바가 본래부터 현저하여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공공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박물관자료를 박물관 소장품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국내 혹은 국제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2.11 참조)

### 3.5 연구

박물관 직원이 수행하는 연구는 박물관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기존의 법적, 윤리적, 학술적 관례를 따라야 한다.

### 3.6 파괴 분석

파괴 분석 기법이 시행되는 경우, 분석된 자료에 대한 모든 기록과 분석 결과, 출판물을 비롯한 연구 결과는 해당 박물관자료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 3.7 사람의 인골 및 신성한 의미를 지닌 박물관자료

사람의 인골 및 신성한 의미를 지닌 박물관자료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유래 되었다고 알려진 공동사회, 민족 또는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믿음을 고려하고 전문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5: 4.3 참조)

### 3.8 연구 자료에 대한 권리 보유

박물관 직원이 발표나 현지 조사 기록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모든 권리 사항에 대해 연구 지원 박물관의 분명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9 전문성 공유

박물관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관련 분야의 동료, 학자, 학생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후자는 가르침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진보와 경험을 지속하여 전달해야 한다.

### 3.10 박물관과 타 기관 간의 협력

박물관 직원은 유사한 관심과 수집 활동을 하는 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고등교육기관 및 장기적인 보안책 없이 중요 소장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공익 사업체와 협력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 4

###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원칙

박물관은 교육적 역할을 개발하고 박물관이 이바지하는 지역 사회 혹은 공동체로부터 광범위한 이용자의 관심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그들의 유산을 진흥하는 것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진열 및 전시

##### 4.1 진열, 전시 및 특별 활동

진열과 임시 전시(실물 또는 전자 전시) 등은 명문화된 박물관의 시명, 정책,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소장품의 상태 수준이나 적절한 보호, 보존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4.2 전시의 해석

박물관은 진열과 전시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지, 또한 전시 내용과 관련된 공동체나 신앙에 대한 존중이 적절하게 내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4.3 민감한 박물관자료의 전시

사람의 인골 및 신성한 의미를 지닌 박물관자료는 그것이 유래되었다고 알려진 공동사회, 민족 또는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믿음을 고려하고 전문적인 규범에 부합하여 전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박물관자료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훌륭한 미적 감각을 활용하여 전시되어야 한다.

##### 4.4 공개 전시의 철수

사람의 유골 및 신성한 의미를 지닌 박물관자료를 해당 공동체에서 철수하도록 요청 받을 때에는 세심한 주의와 민감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한 박물관자료의 반환 요청 역시 유사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정책은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4.5 출처가 불분명한 박물관자료의 전시

박물관은 출처가 의문스럽거나 출처 파악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박물관자료를 전시하거나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시나 활용은 문화재의 부정확한 거래를 목과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

#### 기타 자원

##### 4.6 출판

매체를 불문하고 박물관이 발간하는 모든 정보는 근거가 충분함과 동시에 정확해야 하며, 관련 학문 분야, 사회, 신앙에 대한 책임 있는 고찰을 해야 한다. 박물관의 출판물은 해당 기관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4.7 복제

박물관은 소장품 내 박물관자료의 재현품, 모사품 혹은 복제품을 제작할 경우 진품의 총체적 완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모든 복제품들은 복제본으로 영구히 표시되어야 한다.

## 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

### 원칙

박물관은 더욱 널리 응용할 수 있는 전문성, 기술, 그리고 물적 자원 등의 폭넓은 다양함을 활용한다. 이러한 활용은 확대된 개념의 박물관 활동으로서 자원의 공유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명문화된 박물관의 사명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한다.

### 감정 업무

#### 5.1 불법적이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취득된 박물관자료의 감정

박물관이 감정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통해 박물관이 직간접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이거나 부정확하게 취득, 양도, 반입 혹은 반출되었다고 믿어지거나 의심되는 박물관자료의 감정과 진위 여부는 적절한 관계 당국에 보고되기 전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5.2 진위 여부와 감정 평가

감정 평가는 박물관 소장품의 보행 기업을 목적으로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외 박물관 자료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의견은 다른 박물관, 소관 사법기관,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 요구가 있을 때에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이 수혜기관이 되는 경우 박물관 자료의 감정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 원칙

박물관 소장품은 해당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반영한다. 이러한 유산들은 자산으로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넘어서 국가, 지역, 지방, 민족, 종교 및 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박물관의 정책은 그러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장품의 출처지

#### 6.1 협력

박물관은 박물관자료가 유래한 국가와 지역의 박물관 및 문화기관과의 지식, 정보, 소장품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유산 등을 소실한 국가 혹은 지역 내 박물관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6.2 문화재의 반환

박물관은 박물관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과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화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나 정치적 차원의 활동에 앞서, 적용 가능한 해당국의 법령 및 국제적 법령 뿐만 아니라 과학적, 전문적,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6.3 문화재의 원상 회복

박물관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이, 국제 및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반출 또는 양도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박물관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것이 실제 요청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인 경우, 관련 박물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 해당 박물관자료의 반환에 협력하기 위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4 피점령국에서 유래한 문화재

박물관은 피점령국 영토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구입이나 취득을 금지하고 박물관자료의 반입, 반출 및 양도를 규제하는 모든 법과 협약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

### 6.5 현대의 지역사회

박물관 활동이 현대의 지역사회 혹은 그 유산과 관련하고 있는 경우 박물관 자료의 취득은 기존 소유자나 정보 제공자에게 철저한 신뢰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상호간의 동의에 기반을 두며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바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6.6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자금 운용

박물관이 현대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1.10 참조)

### 6.7 현대 지역사회에서 유래한 소장품의 이용

현대 지역사회에서 유래한 소장품을 박물관이 이용하려면 인간의 존엄성과 그 박물관자료를 사용하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이와같은 소장품은 다양한 사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지지함으로써 인류의 복지, 사회의 발전, 관용 및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4.3 참조)

### 6.8 지역사회의 지원 단체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예 : 박물관 친구들, 기타 지원 단체), 그들의 기여에 감사하며, 지역사회와 박물관 직원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 7

###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원칙

박물관은 국제, 지역, 국가 그리고 지방의 법령과 조약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박물관과 소장품, 박물관 운영에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신탁이나 조건에 따라야 한다.

#### 법적 체계

##### 7.1 국내 법령

박물관은 모든 국내법 및 지방 법령을 준수하고 박물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법령도 중요시 하여야 한다.

##### 7.2 국제 법령

박물관 정책은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국제 법령을 인정하여야 한다.

- 무력 충돌 및 전쟁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954년 “헤이그협약” 제1차 의정서, 1999년 제2차 의정서)
-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UNESCO, 1970)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워싱턴, 1973)
-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UN, 1992)
-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UNIDROIT, 1995)
- 수중문화재 보호 협약 (UNESCO, 2001)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UNESCO, 2003)

## 8

###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원칙

박물관직 종사자는 공인된 규범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 직업의 품격과 명예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업무 행위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물관은 박물관직의 사명, 목적, 포부를 대중에게 교육시키고 알리는 데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 직업적 품행

##### 8.1 관련 법령의 숙지

모든 박물관직 종사자는 관련 국제법, 국내법, 지방 법령 그리고 임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여기어 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8.2 직업적 의무

박물관직 종사자는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물관, 박물관직, 직업윤리 등에 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다.

##### 8.3 직업적 품행

동료 직원과 소속 박물관에 대해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한 직업적 의무이다. 이는 직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의 준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 원칙은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의 조화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다른 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8.4 학술적 과학적 책임

박물관직 종사자는 소장품의 고유 정보에 대한 조사, 보존 그리고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직 종사자는 학술적·과학적 정보 자료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이나 상황을 멀리하고 삼가야 한다.

## 8.5 불법 시장

박물관직 종사자는 자연 및 문화 유산의 부정합 거래 혹은 매매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 8.6 기밀성

박물관직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더욱이 감정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들어온 박물관자료의 정보는 기밀이며 소유자의 특별한 허락 없이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공표되거나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 8.7 박물관 및 소장품 보안

박물관 직원은 박물관 혹은 개인 소장품들의 보안 관련 정보나 업무수행 중 방문한 장소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8.8 기밀유지 의무의 예외

도난, 부정 획득 혹은 불법 양도의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 조사할 때에는 경찰이나 해당 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기밀 유지에 우선한다.

## 8.9 개인의 자주성

직업 종사자들이 개인의 자주성에 대한 방편을 마련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적

용무나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8.10 직업적 관계

박물관직 종사자는 소속된 박물관의 내부 및 외부의 많은 사람들과 업무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직업으로서의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8.11 직업적 자문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내리는데 필요한 전문성이 박물관 내에서 부족한 경우 해당 박물관의 내부 혹은 외부의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직업적인 의무이다.

## 이해의 상충

### 8.12 선물, 후원, 대부 혹은 기타 사적 이익

박물관 직원은 직무 관계상 제공될 수도 있는 선물, 후원, 대부 혹은 기타 사적인 이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끔 직업적 예의로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8.13 외부 고용 또는 업무적 이해관계

박물관직 종사자들은 개인의 자주성에 대한 방편을 마련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적 용무나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유급 고용직을 맡는다는지 박물관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외부의 임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8.14 자연과 문화 유산의 거래

박물관직 종사자는 직간접적으로 자연과 문화 유산의 거래(영리를 위한 매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8.15 거래 업자와의 상호 관계

박물관직 종사자는 거래업자, 경매인 혹은 타인으로부터, 박물관자료의 구입이나 처분을 유도하거나 공식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선물, 접대, 기타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박물관직 종사자는 특정 거래업자, 경매인 또는 감정인을 일반인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8.16 개인적인 수집 활동

박물관직 종사자는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수집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속된 기관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개인적인 수집 활동에 관련하여 당사자와 관리주체 간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 8.17 ICOM의 명칭과 로고의 사용

본 기관의 명칭, 약칭 및 로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상품의 장려 또는 승인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8.18 기타 이해의 상충

개인과 박물관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박물관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 감정 평가(Appraisal)

박물관자료의 진위 여부와 평가. 어떤 국가에서는 기증이 신청된 박물관자료에 대해 세금 수혜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 이해의 상충 (Conflict of Interest)

업무 환경에서 원칙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적인 이해의 공존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의사 결정의 객관성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보존 전문가 · 수복 전문가 (Conservator · Restorer)

문화재의 기술적 조사, 보존, 보존 및 수복 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박물관 인력 혹은 개인 인력. (더 자세한 정보는 *ICOM News* Vol.39 No.1(1986) pp.5-6 참조)

##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

미학적, 역사적, 과학적 혹은 정신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물이나 개념.

## 거래(Dealing)

개인 혹은 기관의 이익을 위해 박물관 자료를 매매하는 것.

## 주의 의무(Due Diligence)

일단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노력. 특히, 박물관 자료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전, 제공된 박물관자료의 출처와 내력을 확인하는 것.

## 관리주체(Governing Body)

박물관의 존속, 전략적 발전 및 자금 운용에 대한 의무가 있음이 박물관의 설립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나 조직.

## 수입 산출 활동 (Income-generating Activities)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적 수입이나 이익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활동.

## 법적 소유권(Legal Title)

해당 국가 내의 재산 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 어떤 국가에서는 이것이 부여된 권리의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의무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최소한의 규범 (Minimum Standard)

모든 박물관과 박물관직 종사자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범. 어떤 국가들은 자체적인 최소한의 규범에 대한 성명서를 가지고 있다.

## 박물관(Museum)\*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유형·무형의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

## 박물관직 종사자\* (Museum Professional)

박물관직 종사자는 (유급·무급에 관계없이) ICOM 정관 2.1, 2.2항에서 정의한 박물관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전문적 교육을 받았거나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분야에서 동등한 실무 경력을 갖고,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ICOM 정관에서 정의된 박물관에서 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물관과 박물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상업적인 물건 및 장비를 판촉하거나 매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자연 유산(Natural Heritage)

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숭고함이 표명되는 자연물, 현상 혹은 개념.

## 비영리 기관 (Non-profit Organisation)

수입(잉여금 혹은 이익금 포함)이 전적으로 기관과 기관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비법인 기관. '비영리 목적(not-for-profit)'이라는 용어도 동일한 의미이다.

## 출처(Provenance)

발견되거나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박물관자료에 관한 모든 내력 및 소유권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진위 여부와 소유권을 결정한다.

## 합법적 소유권(Valid Title)

발견되거나 생산된 이후의 출처가 모두 확인되는 박물관자료의 소유에 대한 명백한 권리.

## 한글본에서의 용어\*\*

###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

###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 '박물관' 과 '박물관직 종사자' 라는 용어는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을 해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잠정적 정의임. ICOM 정관에 명시된 '박물관' 과 '전문직 박물관 직원' 의 정의는 정관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지님.

\*\* 대한민국『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정의)에 준거하여 영어본의 'Museum(s)' 을 '박물관' 으로, 'Item(s)', 'Material(s)', 'Object(s)', 'Specimen(s)' 등을 '박물관 자료' 로 번역함.



2006년은 ICOM 창립 60주년과 박물관 윤리강령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해에 ICOM 박물관 윤리강령 개정본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COM은 보다 많은 박물관직 종사자들이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전 세계에 널리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 기관인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박물관친구들연맹(World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WFFM)이 본 발간을 인센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Alissandra Cummins**

ICOM 회장

2006년 1월, 파리

..... ◇ ◇ ◇ .....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ICOM 서울세계박물관대회는 ICOM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가에서 열린 세계대회였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서울선언문’ 채택과 세계 박물관인들이 숙지해야 할 ICOM 박물관 윤리강령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ICOM 박물관 윤리강령 2004년 개정본의 한글 발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신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업 관계자들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최정필**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신광섭**  
문화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2007년 5월, 서울

**ICOM 박물관 윤리강령 한글본 발간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 |                         |                      |
|-------------------------|----------------------|
|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 팀장) | 김종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 김태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교류협력 담당) | 노선희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
| 박민권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과장)  | 신광섭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
| 신영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신현철 (국립중앙과학관 공업연구관)  |
|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이은영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
| 장경숙 (ICOM 한국위원회 간사)     | 정준희 (문화관광부 법무팀 사무관)  |
| 최용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 부장)    | 최정필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
|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전 세계의 자연과 문화, 현재와 미래,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보존, 지속, 소통하는데 헌신하는 박물관과 박물관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 범세계적 네트워크

145개 이상의 국가에서 21,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ICOM은 모든 학문 분야와 전문 분야의 박물관직 종사자들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이다.

#### 비정부 기구

ICOM은 1946년에 설립된 비정부, 비영리 기구로서 유네스코(UNESCO)와는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와는 자문 관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Maison de l' 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 France

전화: +33 (0)1 47 34 05 00

팩스: +33 (0) 1 43 06 78 62

이메일: [secretariat@icom.museum](mailto:secretariat@icom.museum)

웹사이트: <http://www.icom.museum>